



## 독일 부모휴직수당 및 부모휴직에 관한 법률 소개 (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 ; BEEG)<sup>1)</sup>

### I. BEEG의 입법배경 및 목적

#### 1. 입법배경

출산을 저조로 인한 고령화와 생산력 저하를 고민하는 것은 21세기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문제이다. 각 나라에서 이를 해결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기민당(CDU)과 기사련(CSU) 그리고 사민당(SPD)의 대연정을 통해 “아이들에게 엄마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버지 또한 필요하다(Kinder brauchen Mütter, Kinder brauchen aber auch Väter)”는 모토아래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고민의 이면에는 어머니, 즉 아이를 가진 젊은 여성의 직장(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더불어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의무(동시의 권리)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자료에 의하면 일반 남녀가 1960년도에 비해 평균적으로 50% 더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고 있

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휴직상황이 길어진다는 것은 개별 노동자에게 있어서 단순히 월 수입과 자신의 경력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해당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독일에서는 일년에 대략적으로 40만 명의 여성이 부모휴직(Elternzeit)<sup>2)</sup>, 즉 양육휴가를 가지고, 그 절반 정도의 숫자가 직장으로 돌아온다고 한다. 입법을 통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출산이 부모의 직장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sup>3)</sup> 이에 연방가족부장관인 우슬라(Ursula von der Leyen)는 이 법안이 단순히 정치적인 것의 고려를 넘어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희망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sup>4)</sup>

#### 2. 목적

이 법의 목적은 아직 자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젊

\*\*\* -----

- 1) Bundeseltern-geld- und Elternzeitgesetz 라고도 하며, 이하 'BEEG' 라 한다.
- 2) 부(父)와 모(母)는 아이가 만 3살에 달하기 전까지 부모휴직(Elternzeit)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주의 동의 하에 만 3살이 도달한 이후 12개월 내에도 신청 가능하다. 그러나 만 8살이 경과하면 어떤 이유로건 부모휴직을 신청할 수 없다.
- 3)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노동계-노동자와 고용자의 관계를 고려한 개념-에 있어 부모들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휴직정책이 필요하게 되며, 정부차원에서는 실질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 4) “Rückzugs, aber auch ein Ort, wo Menschen für andere und für sich selbst Verantwortung übernehmen”. 이는 가족에서 부모의 역할이 단순히 경제적인 책임자로서가 아니라 더불어 정신적·비물질적인 부분 또한 책임지고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은 부부(사실혼 포함) 그리고 이미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에게 출산을 결정하는데 있어 용기를 북돋우고 자극하기 위함이다. 이와 더불어 실질적인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부와 모가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는 합리적인 금액의 양육보조금을 통해서, 현재까지 모 쪽에 치우쳐 있었던 육아휴직의 선택을 부 측에서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 법의 적용대상인 자녀<sup>9)</sup>의 부모는 월 순소득(Nettoverdienst)의 3분의 2, 즉 67%의 금액을 지급 받게 되며, 이는 남녀로 가족을 이루지 않은 개별 남(男) 혹은 녀(女)의 경우도 동일하다. 즉, 이 법을 통한 실질적인 목적은 출산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의 감소를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출산을 저조를 줄이고 그 반대의 효과를 이루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 3. 아동수당(Kindergeld)과의 구별

아동수당(Kindergeld)도 역시 국가적인 보조금으로서 양육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이다. 이는 자녀 연령이나 인원에 관계없이 지급되며, 부모휴직수당(Elterngeld)에 포함되어 계산되지 않는다. 아동수당(Kindergeld)의 청구권자 역시 자녀의 양육자, 즉 부모이며 자녀가 18세까지 지급된다. 특별한 경우 - 자녀가 여전히 직업적 수입 없는 학생이거나 직업교육을 받는 중일 경우 - 25세까지<sup>6)</sup> 연장되어 지

급될 수 있다.

금액의 경우 첫 아이부터 셋째 아이까지 각 154 유로(Euro)가 지급되고 네 번째 아이부터는 각 179 유로가 지급된다.

## II. BEEG의 주요 내용

이 법을 통해,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직장활동이 불가능해지거나 제한을 받는 사람은, 월 순 수입(Nettoverdienst)의 67%, 한달 최대 1,800 유로(Euro)까지를 보전받게 된다.<sup>9)</sup>

월 순수입이 1,000 유로 이하인 양육자(부모)에 대하여는 종전 수익의 100%까지 지급될 수도 있다.<sup>10)</sup>

이 법으로 인해, 일자리를 통한 수입을 상실하거나 혹은 적은 부모들 또한 혜택을 받게 된다. 즉, 이러한 경우 모든 양육자(부모)는 가족수입에 무관하게 300 유로의 기본급을 지급받게 된다.<sup>11)</sup>

부모휴직수당은 1년, 즉 12개월간 지급하며, 양육자(부모)는 이 지급액을 2년에 걸쳐서 나누어 받을 수 있다.<sup>12)</sup>

부모휴직수당이 지급되는 12개월은 부모의 양자에게 나누어 지급될 수 있다. 또한 추가로 부모 중 한 명이 2개월 치를 더 받을 수 있다. 이 경우도 역시 부모의 수입이 양육으로 인해 감소했을 경우여야 한다.<sup>13)</sup>

추가적인 출산에 대해서는 월 300 유로가 더 지급될 수 있다.<sup>14)</sup> 쌍둥이의 경우도 추가적인 출산으로

\*\*\* -----

5) 시간적으로,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

6) 종전에는 27세 까지였으나, 2007년 이후로 25세로 낮춰졌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 1981까지 출생한 자는 27세까지
- 1982에 출생한 자는 26세까지
- 1983이후 출생한자는 25세까지 Kindergeld를 지급받을 수 있다.

7) 제 3 절은 통계와 완결규정(statistik und Schlussverschriften)이다.



본다.<sup>15)</sup>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는 이 법의 부모 휴직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sup>16)</sup> 현재까지 유지되는 부모휴직에 관한 규정은 지속된다. 이 법을 통한 보조금은 세금계산에서 유보된다.

### III. 결론

이 법률을 통한 영향력이 젊은 부모 혹은 동거인이 아이의 출산을 결심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으로 높은 보조금을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독일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지는 미지수이다. 지원금액

이 실질적인 생활을 보전해 줄 정도로 크기는 하나, 엄밀히 보아 12개월에서 많게는 14개월 동안의 한정적인 금전지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적인 가족정책이 성공하기 위하여, 또 다른 정치적인 제도인 육아양육보조나 더 나아가 친(親)육아적인 노동시장 환경형성이 함께 잘 어울려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입법자의 기대처럼, 독일이 가족과 직장을 잘 조화시켜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석종욱

(독일 주재 외국법제조사원)

#### \*\*\* -----

- 8) '가내근로자'란 일반적으로 사용자나 계약상대방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없는 작업자의 주거 또는 작업자가 스스로 선택한 장소에서 그 사용자나 계약상대방을 위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를 말한다. 추가적으로 자립형과 비자립형 가내근로로 나누기도 한다( Selbständige Heimarbeit, Unselbständige Heimarbeit).
- 9) §2 (1) BEEG: Elterngeld wird in Höhe von 67 Prozent des in den zwölf Kalendermonaten vor dem Monat der Geburt des Kindes durchschnittlich erzielten monatlichen Einkommens aus Erwerbstätigkeit bis zu einem Höchstbetrag von 1800 Euro monatlich für volle Monate gezahlt, in denen die berechtigte Person kein Einkommen aus Erwerbstätigkeit erzielt.
- 10) §2 (2) BEEG: In den Fällen, in denen das durchschnittlich erzielte monatliche Einkommen aus Erwerbstätigkeit vor der Geburt geringer als 1000 Euro war, erhöht sich der Prozentsatz von 67 Prozent um 0,1 Prozentpunkte für je zwei Euro, um die das maßgebliche Einkommen den Betrag von 1000 Euro unterschreitet, auf bis zu 100 Prozent.
- 11) §2 (5) BEEG: Elterngeld wird mindestens in Höhe von 300 Euro gezahlt. Dies gilt auch, wenn in dem nach Absatz 1 Satz 1 oder 2 maßgeblichen Zeitraum vor der Geburt des Kindes kein Einkommen aus Erwerbstätigkeit erzielt worden ist.  
 일정한 경우, 부모휴직수당과 실업수당을 선택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실업자로 등록된 상태에서는 실업수당에 추가로 300 유로가 부모휴직수당으로 지급될 수 있고, 실업수당을 받지 않을 것을 명시한 경우 이전 수입의 67%를 규정대로 부모휴직수당으로서 지급받게 될 것이다. (<http://www.elterngeld.com/elterngeld-arbeitslos.html>)
- 12) <http://www.elterngeld.com/elterngeld-einfuehrung.html>
- 13) §4 (2) BEEG: Elterngeld wird in Monatsbeträgen für Lebensmonate des Kindes gezahlt. Die Eltern haben insgesamt Anspruch auf zwölf Monatsbeträge. Sie haben Anspruch auf zwei weitere Monatsbeträge, wenn für zwei Monate eine Minderung des Einkommens aus Erwerbstätigkeit erfolgt. Die Eltern können die jeweiligen Monatsbeträge abwechselnd oder gleichzeitig beziehen.
- 14) §2 (6) BEEG: (6) Bei Mehrlingsgeburten erhöht sich das nach den Absätzen 1 bis 5 zustehende Elterngeld um je 300 Euro für das zweite und jedes weitere Kind.
- 15) <http://www.elterngeld.com/elterngeld-einfuehrung.html>
- 16) §15 (4) BEEG: der Arbeitnehmer oder die Arbeitnehmerin darf während der Elternzeit nicht mehr als 30 Wochenstunden erwerbstätig sein.